

창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108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108009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5. 24 선고 2023가단2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근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6. 14.

판결 선고 2024. 7. 26.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5. 24. 선고 2023가단250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답 3,629m²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2. 7. 19. 접수 제82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3면 11행의 "주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을 제1호증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영수증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담당검사는 2024. 6.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피고의 2024. 7. 5.자 준비서면 첨부자료 참조)]

○ 3면 밑에서 3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잔금 25,0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이진석

판사김상욱